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①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 및 제3보험설계사[제30조제1항에 따른 간단생명보험대리점, 간단손해보험대리점, 간단제3보험대리점(이하 “간단보험대리점”이라 한다) 소속의 보험설계사(이하 “간단보험설계사”라 한다)를 포함한다]로 구분한다.

제2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의 단서를 삭제한다.

다만, 간단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는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간단보험대리점이 영위하는 본업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종목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등록요건) ① 법 제87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은 개인인 보험대리점(이하 “개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과 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각 대리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또는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한 재화·용역의 중개를 본업으로 하는 자가 판매·제공·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

있는 각 호의 대리점이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간단보험대리점을 포함한다].

1. 생명보험대리점
2. 손해보험대리점
3. 제3보험대리점

제3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의 단서를 삭제한다.

다만, 각 호의 간단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는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종목으로서 간단보험대리점을 통하여 판매·제공·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종목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한다.

제33조의2제4항 중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한다.

제57조의2제2항제2호 중 “100분의 200”을 “100분의 130”으로 한다.

제59조제4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수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 업무

제84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모집,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 등 보험 관련 단순민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민원의 상담·처리

제102조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84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민원의 상담·처리에 관한 사무  
제10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96조의4 및 별표 7의2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교육기간 및 교육기  
준 등 : 2024년 1월 1일

별표3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등록요건
개인 보험 대리점	생명 보험 대리점	(현행과 같음)
	손해 보험 대리점	(현행과 같음)
	제3 보험 대리점	(현행과 같음)
법인 보험 대리점	생명 보험 대리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 (현행과 같음) 나.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법 제91조 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이 영 제30조제1 항제1호에 따른 간단생명보험대리점은 제외 한다)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 이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
	손해 보험 대리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 (현행과 같음) 나.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법 제91조 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이 영 제30조제1

	항제2호에 따른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
제3보험 대리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 (현행과 같음) 나.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법 제91조 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및 이 영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간단제3보험대리점은제외한다)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

별표4 제1호 중 “간단손해보험설계사 및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간단보험설계사 및 간단보험대리점”으로 하고, 제2호 중 “간단손해보험설계사 및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간단보험설계사 및 간단보험대리점”으로 하고, 제3호 중 “간단손해보험설계사 및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간단보험설계사 및 간단보험대리점”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 및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7조(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①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제30조제1항에 따른 <u>간단손해보험대리점</u> 소속의 <u>손해보험설계사</u>(이하 “간단손해보험설계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3보험설계사로 구분한다.</p> <p>②~④ (생략)</p> <p>제28조(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 ① 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lt;신설&gt;</p>	<p>제27조(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①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설계사, <u>손해보험설계사</u> 및 <u>제3보험설계사</u> [제30조제1항에 따른 <u>간단생명보험대리점</u>, <u>간단손해보험대리점</u>, <u>간단제3보험대리점</u>(이하 “간단보험대리점”이라 한다) 소속의 <u>보험설계사</u>(이하 “간단보험설계사”라 한다)를 포함한다]로 구분한다.</p> <p>②~④ (현행과 같음)</p> <p>제28조(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 ① 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u>다만, 간단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는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간단보험대리점이 영위하는 본업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종목으로 한다.</u></p>

1. (생략)
2. 손해보험설계사: 법 제4조 제1항제2호의 보험종목. 다만, 간단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는 제30조제1항각호에 따른 간단보험대리점이 영위하는 본업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종목으로 한다.

제30조(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등록요건)

- ① 법 제87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은 개인인 보험대리점(이하 “개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과 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각각 생명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또는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한 재화·용역의 중개를 본업으로 하는 자가 판매·제공·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1. (현행과 같음)
2. 손해보험설계사: 법 제4조 제1항제2호의 보험종목. <삭제>

제30조(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등록요건)

- ① 법 제87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은 개인인 보험대리점(이하 “개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과 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각 대리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또는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한 재화·용역의 중개를 본업으로 하는 자가 판매·제공·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

관련 있는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손해보험대리점(이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3보험대리점으로 구분한다.

1. <신 설>
  2. <신 설>
  3. <신 설>
- ② ~ ③ (생략)

제31조(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

① 보험대리점[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 설>

역과 관련 있는 각 호의 대리점이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간단보험대리점을 포함한다].

1. 생명보험대리점
  2. 손해보험대리점
  3. 제3보험대리점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

① 보험대리점[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각 호의 간단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는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종목으로서 간단보험대리점을 통하여 판매·제공·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종목으로 한다.

1. 생명보험대리점: 법 제4조 제1항제1호의 보험종목
2. 손해보험대리점: 법 제4조 제1항제2호의 보험종목. 다만,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는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종목으로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통하여 판매·제공·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종목으로 한다.

제32조(보험대리점의 등록 제한)

- ① (생략)
-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 할 수 있다.

제33조의2(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 ① ~ ③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손해보험대리점: 법 제4조 제1항제2호의 보험종목. <삭제>

제32조(보험대리점의 등록 제한)

- ① (생략)
-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 할 수 있다.

제33조의2(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생략)

가. 제4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나~라. (생략)

4. (생략)

5. 제3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인터넷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를 통해서만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할 것

가.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

나. 단체보험계약을 위하여 피보험자로 이루어진 단체를 구성하는 행위

제57조의2(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금지의 예외)

④ 간단보험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생략)

가. <삭 제>

나~라.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제3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간단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인터넷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를 통해서만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할 것

가.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

나. 단체보험계약을 위하여 피보험자로 이루어진 단체를 구성하는 행위

제57조의2(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금지의 예외)

① (생략)

② 보험회사는 법 제113조 단서에 따라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자회사(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위한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채무보증 한도액이 보험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3 이내일 것
2. 보험회사의 직전 분기 말 지급여력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일 것
3. ~ 4. (생략)

③ ~ ④ (생략)

제59조(자회사의 소유)

① ~ ③ (생략)

④ 법 제11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 7. (생략)
8. <신설>

① (생략)

② 보험회사는 법 제113조 단서에 따라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자회사(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위한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채무보증 한도액이 보험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3 이내일 것
2. 보험회사의 직전 분기 말 지급여력비율이 100분의 130 이상일 것
3. ~ 4.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략)

제59조(자회사의 소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1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 7. (현행과 같음)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수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

9. (생략)

제84조(보험협회의 업무)

① (생략)

② 법 제17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9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2. 다른 법령에서 보험협회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업무
3. 보험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업무
4. 차량수리비 실태 점검업무
5. 모집 관련 전문자격제도의 운영·관리 업무
- 5의2.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 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경력(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수집·관리·제공에 관한 업무
6. 보험가입 조회업무
7.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보험

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 업무

9. (현행과 같음)

제84조(보험협회의 업무)

① (생략)

② 법 제17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9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2. 다른 법령에서 보험협회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업무
3. 보험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업무
4. 차량수리비 실태 점검업무
5. 모집 관련 전문자격제도의 운영·관리 업무
- 5의2.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 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경력(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수집·관리·제공에 관한 업무
6. 보험가입 조회업무
7.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보험

회사,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로 부터 위탁받은 업무

8.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수행하는 사회 공헌에 관한 업무

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홍보 업무

1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업무

11. <신 설>

제10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③ (생략)

④ 보험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회사,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로 부터 위탁받은 업무

8.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수행하는 사회 공헌에 관한 업무

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홍보 업무

1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업무

11.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모집,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 등 보험 관련 단순 민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민원의 상담·처리

제10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③ (생략)

④ 보험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 ~ 6. (생략)
7. <신설>

제103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신설>

[별표3]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

1. (생략)
2.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구분		등록요건
개인	생명	(생략)
보험	보험	

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 ~ 6. (생략)
7. 제84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민원의 상담·처리에 관한 사무

제103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제96조의4 및 별표 7의2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교육기간 및 교육기준 등 : 2024년 1월 1일

[별표3]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

1. (현행과 같음)
2.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구분		등록요건
개인	생명	(현행과 같음)
보험	보험	

대리 점	대리 점	
	손해 보험 대리 점	(생 략)
	제3 보험 대리 점	(생 략)
법인 보험 대리 점	생명 보험 대리 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 두 갖춘 법인 가. (생 략) 나.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법 제91조 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은 제외한다)의 경우 소 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법 제84조에 따 른 보험설계사 등록요건 을 갖춘 법인
	손해 보험 대리 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 두 갖춘 법인 가. (생 략) 나.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법 제91조 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이 영 제30조제1항 에 따른 간단손해보험대

대리 점	대리 점	
	손해 보험 대리 점	(현행과 같음)
	제3 보험 대리 점	(현행과 같음)
법인 보험 대리 점	생명 보험 대리 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 두 갖춘 법인 가. (현행과 같음) 나.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법 제91조 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이 영 제30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간단생명 보험대리점은제외한다) 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법 제 84조에 따른 보험설계 사 등록요건을 갖춘 법 인
	손해 보험 대리 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 두 갖춘 법인 가. (현행과 같음) 나.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법 제91조 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이 영 제30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간단손해

	리점은 제외한다)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
제3 보험 대리 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 (생략) 나.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법 제91조 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

	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
제3 보험 대리 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 (현행과 같음) 나.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법 제91조 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이 영 제30조제1항 제3호에 따른 <u>간단제3 보험대리점</u> 은 제외한다)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

3. (생략)

[별표4]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교육기준

1.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간단손해보험설계사 및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 및 보험중개사의 교육기준

3. (현행과 같음)

[별표4]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교육기준

1.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간단보험설계사 및 간단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 및 보험중개사의 교육기준

<p>2.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u>간단손해보험설계사</u> 및 <u>간단손해보험대리점</u>은 제외한다) 및 보험중개사의 불완전판매방지교육 교육기준</p> <p>3. <u>간단손해보험설계사</u> 및 <u>간단손해보험대리점</u>의 교육기준</p>	<p>2.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u>간단보험설계사</u> 및 <u>간단보험대리점</u>은 제외한다) 및 보험중개사의 불완전판매방지교육 교육기준</p> <p>3. <u>간단보험설계사</u> 및 <u>간단보험대리점</u>의 교육기준</p>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보험과
연 락 처	02-2100-2964